

MS.1969. - 1970.1229이전/RF3a

김영중. 「조각작품의 (크기) 산출기초 및 기호 해설」. 1969년 - 1970.12. 29이전.

조각작품의 (크기)산출기초 및 기호 해설

[차례]

1. 산출기초설정의 필요성

- 1.1. 국가적·문화적 의의
- 1.2. 작가의 작품의욕도
- 1.3. 우수작가의 사회적 대우
- 1.4. 30대 전후 작가의 적극적 제작
- 1.5. 조각문화의 질서발생

2. 산출기초해설

- 2.1. 산출기초(0.018㎡의 성격/부조산출방법/입체조각산출방법: 공간성과 입체성)
- 2.2. 서양화의 호수와 조각의 호(중)수 비교 (비교표/설명문)
- 2.3. 5호(중) 이하의 작품의 성격에 따라 호(중) 기준에서 제외하는 이유
- 2.4. 300호(중) 이하에서 조각면적이 적고 300호(중) 이상에서 조각면적이 커지는 이유
- 2.5. 입체로 보지 않고 평면으로 보는 이유

3. 호(중)단가를 서양화 : 조각 = 1 : 3으로 하는 이유

4. 호(중)단가의 차등

- 4.1. 예술적 성취도에 의한 가격 차등: 대가/중진/중견/신인 차등
- 4.2. 재료의 차이에 의한 가격 차등
 - 4.2.1. 서양화의 차등: 유화·수채화·세필화·목탄화 등의 차등
 - 4.2.2. 조각의 차등: 석고상·청동상·주철상·뉴무상·석상(화강석·대리석)·목상·철용접상·테라코타상·도조상·플라스틱상 등 재료 차등
- 4.3. 제작상 타 분야와의 제작과정 차등
- 4.4. 제작비 차등 (재료/인건비/운반/포장/설치 등의 차/시설·면적 및 운영 등의 제작실의 여건 차/제작상 노동과 정신/제작기간의 필수성 등)

5. 기호 및 산출기초 설정의 의의

- 5.1. 조각문화의 자유성 및 질서 확립
- 5.2. 작품위주의 공정한 평가형성
- 5.3. 조각예술의 창작의욕 촉진
- 5.4. 신진작가의 능력개발 및 저변확대
- 5.5. 이래서 국가의 조각문화는 가속적 발전이 온다.

조각작품의 (크기)산출기초 및 기호

1. 중의 단위

$$1\text{중(重)} = 0.018\text{m}^2 (=1.8\text{cm}^2)$$

총면적을 0.018m^2 로 나눈 수를 중(重)의 수량으로 정한다.
따라서 0.018m^2 의 100배는 100중(重)이 된다.

2. 중의 의미

기호를 중(重)으로 한 것은 ‘무겁다’는 뜻과 ‘겹친다’는 뜻 혹은 ‘싼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각적이다. (예: 5중탑, 3중탑 등)

3. 중수의 크기와 단위면적 비교

상기한 조각의 중(重)수는 회화의 호(號)수 면적비를 기초로 하되, 복잡하고 불합리성을 배제하여 조각작품의 제작 실정에 맞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회화에 있어서는 인물, 풍경, 해경 등으로 같은 호수라 하더라도 실지 면적이 각각 다르며, 각 호의 면적을 호수로 나눈 1호당 면적의 크기와 독립된 1호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 따라서 서양화의 호수는 십진법으로는 산출이 전연 불가하다.

그러나 조각에 있어서는 중수에 면적을 곱하면 총면적이 나오고, 그 총면적을 중수로 나누면 1중당 크기는 독립된 1중의 크기와 동일한 면적이 된다. 이와 같이 중수법에 의한 조각작품 크기 계산법은 ‘십진법’을 근간으로 하므로 아무리 큰 작품도 중수계산이 손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 물량적 **??**의 구조체인 입체조각에 알맞은 방법이다.

[예1]: 독립된 1호(중) 크기의 차

- 서양화 1호 크기: 서양화는 독립된 1호 크기의 작품이라 해도 실제로는 3가지 다른 크기의 작품이 존재한다.

인물(F) $22.1 \times 16.6 = 0.036686\text{m}^2$

풍경(P) $22.1 \times 13.9 = 0.030719\text{m}^2$

해경(M) $22.1 \times 11.8 = 0.026078\text{m}^2$

□ 조각작품 1중 크기: 0.018m²(십진법에 의한 단일한 크기)

[예2]: 단위면적 크기 비교

□ 서양화: 각 호마다 단위면적(1호당 크기)이 다르다.

호수(서양화 인물 기준): 작품면적 ÷ 호수 = 1호당 면적

5호: 34.8cm×27.3cm=0.095004m² 0.095004m²÷ 5=0.0190008m²
10호: 53.0cm×45.5cm=0.24115m² 0.24115m²÷ 10=0.024115m²
100호: 162.1cm×130.3cm=2.112163m² 2.112163m²÷100=0.0211216m²
500호: 333.3cm×248.5cm=8.282505m² 8.282505m²÷500=0.016565m²

□ 조각: 각 중의 단위면적(1중당 크기)이 항상 동일하다.

중수: 작품면적 ÷ 중수 = 1중당 면적(0.018m²)

[예3]: 조각의 중수법은 10진법에 기초한 계산법이다.

$$0.018\text{m}^2 \times 100\text{중} = 1.8\text{m}^2, 100\text{중} \times 0.018\text{m}^2 = 1.8\text{m}^2, 1.8\text{m}^2 \div 100\text{중} = 0.018\text{m}^2$$

서양화에서는 101호, 12.5호, 33호... 등이 없다. 그러나 조각에서는 어느 특정공간 즉, 정원, 벽면, 실내, 야외 등에 조화되는 형태를 제작하다보면 그 크기가 일정하게 규격화될 수가 없다. 공간적 제한 없이 작가의 자유로운 작의(作意)에 따라서 작품을 제작할 때에도 규격화된 크기에 따라 제작되는 것이 아니어서 회화와는 달리 101중, 103중, 107중... 등의 크기가 무한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십진법에 의한 조각의 중수산출방법은 계산방법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 순응하는 것이 된다.

대체로 중수 산출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3.5\text{m}^2 \div 0.018\text{m}^2 = 194.44444\text{중}$ (≒194중)이다.

4. 1중의 단위를 0.018m²로 한 이유 (3가지 발견)

4.1. 서양화 호당 단위면적은 평균 0.018m²이다.

조각의 중수단위는 10진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서양화의 F형, P형, M형의 5호 크기를 각각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호당 단위면적이 산출된다.

F형 5호의 호당 단위면적: $0.348\text{m} \times 0.273\text{m} \div 5 = 0.019008\text{m}^2$
P형 5호의 호당 단위면적: $0.348\text{m} \times 0.242\text{m} \div 5 = 0.0168432\text{m}^2$
M형 5호의 호당 단위면적: $0.348\text{m} \times 0.221\text{m} \div 5 = 0.0153816\text{m}^2$

여기서 F형과 P형의 중간쯤을 택하여 호당 단위면적을 추정해보면 0.018m²를 발견할 수가 있다.

4.2. 1사이(尺) = 0.3m²의 면적을 5로 나눈 값은 1중의 값과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건물 및 조형물 작업 시 입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사이’라는 크기 산출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를 5로 나눈 값은 1중의 값과 동일하다. (실상이 값은 서양화의 호당 평균단위면적(=0.0187145)과 거의 흡사하다.)

$$1\text{사이}=1\text{자}\times 1\text{자}=30\text{cm}^2=0.3\text{m}^2 \quad (0.3\text{m}\times 0.3\text{m})\div 5=0.018\text{m}^2$$

4.3. 호수와 중수의 단위별 면적비 비교

서양화 300호 크기는 조각에 비해서 넓으나 F형 500호부터는 조각의 면적이 더 넓어진다. 그 이유는 서양화의 호수가 많아질수록 면적이 작아지고 십진법에 의한 중수법이 적용되는 조각의 경우에는 중수와 면적비가 동일하다.

[표1]: 현행 서양화와 조각의 크기단위 및 면적비교 (숫자단위는 m)

호수	인물(F)		풍경(P)		해경(M)		조각(S)			비고
	크기	호당면적	크기	호당면적	크기	호당면적	중수	면적	중당면적	
0	0.079×0.140	0.025	×0.118	0	×0.100	0				서양화의 경우는 호수의 규격이 다양하나 조각은 0.018m ² 라는 면적으로 통일되고 있음.
1	0.221×0.166	0.036	×0.130	0	×0.118	0	1	×0.018	0.018	
2	0.258×0.179	0.023	×0.179	0	×0.	0	2	×0.018	0.018	
3	0.273×0.220	0.02	×0.190	0.017	×0.160	0.015	3	×0.018	0.018	
4	0.334×0.242	0.02	×0.212	0.018	×0.190	0.016	4	×0.018	0.018	
6	0.409×0.318	0.0216	×0.273	0.019	×0.242	0.016	6	×0.018	0.018	
8	0.455×0.379	0.0216	×0.334	0.019	×0.273	0.016	8	×0.018	0.018	
10	0.530×0.455	0.024	×0.409	0.022	×0.334	0.018	10	×0.018	0.018	
12	0.600×0.500	0.025	×0.455	0.023	×0.409	0.02	12	×0.018	0.018	
15	0.652×0.530	0.023	×0.500	0.022	×0.455	0.02	15	×0.018	0.018	
20	0.727×0.606	0.022	×0.530	0.019	×0.500	0.018	20	×0.018	0.018	
25	0.803×0.652	0.021	×0.600	0.019	×0.530	0.017	25	×0.018	0.018	
30	0.910×0.727	0.022	×0.652	0.02	×0.606	0.018	30	×0.018	0.018	
40	1.000×0.803	0.02	×0.722	0.018	×0.652	0.016	40	×0.018	0.018	
50	1.167×0.910	0.021	×0.803	0.019	×0.727	0.017	50	×0.018	0.018	
60	1.303×0.970	0.021	×0.894	0.019	×0.803	0.017	60	×0.018	0.018	
80	1.455×1.122	0.02	×0.970	0.018	×0.894	0.016	80	×0.018	0.018	
100	1.622×1.303	0.021	×1.121	0.018	×0.970	0.016	100	×0.018	0.018	
120	1.939×1.303	0.021	×1.121	0.018	×0.970	0.016	120	×0.018	0.018	
150	2.273×1.818	0.027	×1.621	0.024	×1.454	0.022	150	×0.018	0.018	
200	2.591×1.939	0.025	×1.818	0.024	×1.621	0.021	200	×0.018	0.018	
300	2.909×2.182	0.021	×1.970	0.019	×1.818	0.018	300	×0.018	0.018	
500	3.333×2.485	0.016	×2.181	0.015	×1.970	0.013	500	×0.018	0.018	

[표2]: 조각면적과 회화면적 비교표 (숫자단위는 m²)

호/중수	조각면적	회화면적			회화 동일호수 3 개의		면적합계를 호수합계로 나눈 값
		인물(F)	풍경(P)	해경(M)	면적합계	호수합계	
1	0.018	0.03686	0.030719	0.026078	0.093483	3	0.031161
2	0.036	0.046182	0.04182	0.046182	0.138546	6	0.023091
3	0.054	0.06006	0.05187	0.04368	0.1042587	9	0.0115843
4	0.072	0.080586	0.070596	0.063063	0.214785	12	0.01789875
5	0.09	0.095004	0.084216	0.076908	0.256128	15	0.0170752
6	0.108	0.130062	0.111657	0.098978	0.340697	18	0.018927611
8	0.144	0.172445	0.151515	0.124215	0.448175	24	0.018673958
10	0.180	0.24115	0.21677	0.17649	0.45792	30	0.015264
12	0.216	0.303	0.27573	0.247854	0.826584	36	0.02960666
15	0.270	0.34503	0.3255	0.296205	0.966735	45	0.021483
20	0.360	0.440562	0.38531	0.3635	1.189372	60	0.019822866
25	0.450	0.522753	0.486618	0.42559	1.434961	75	0.019132813
30	0.540	0.660843	0.591759	0.550854	1.803456	90	0.01803456
40	0.720	0.803	0.727	0.651	2.181	120	0.018175
50	0.900	1.06197	0.937101	0.848409	2.84748	150	0.0189832
60	1.080	1.26391	1.1622	1.0439	3.47001	180	0.019277833
80	1.440	1.631055	1.41135	1.30077	4.343175	240	0.018096562
100	1.800	2.112163	1.81741	1.57237	5.501943	300	0.01833981
120	2.160	2.526517	2.173619	1.88083	6.580966	360	0.018280461
150	2.700	4.132314	3.684533	3.307215	11.124062	450	0.024720137
200	3.600	5.023949	4.710438	4.200011	13.934398	600	0.023223996
300	5.400	6.347438	5.73073	5.288562	17.36673	900	0.019296366
500	9.000	8.282505	7.272606	6.56601	22.121121	1500	0.014747414
합계					97.745967	5223	0.0187145

※ 참고사항: 조각에 있어서 500종의 면적은 $0.018 \times 500 = 9\text{m}^2$ 이나 회화의 $0.031161 \times 500 = 15.5805\text{m}^2$ 로서 실제 500호의 면적 7.373707m^2 보다 8.206793m^2 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3]: 배수 및 단위면적 비교표

호수	인물(F)			풍경(P)			해경(M)			조각(S)		
	면적	배수	단위면적	면적	배수	단위면적	면적	배수	단위면적	면적	배수	단위면적
0	0.0252	0	0.025	0	0	0	0	0	0	0	0	0.018
1	0.036	1	0.0359	0	0	0	0	0	0	0.018	1	0.018
2	0.04618	1.28	0.023	0	0	0	0	0	0	0.036	2	0.018
3	0.06006	1.67	0.02	0.05187	1.44	0.017	0.04368	1.213	0.015	0.054	3	0.018
4	0.08082	2.25	0.02	0.0708	1.966	0.018	0.06346	1.762	0.016	0.072	4	0.018
6	0.130062	3.61	0.021	0.11165	3.101	0.019	0.09897	2.749	0.016	0.108	6	0.018
8	0.17244	4.79	0.021	0.15197	4.221	0.019	0.12421	3.4504	0.016	0.144	8	0.018
10	0.24115	6.69	0.024	0.21677	6.021	0.022	0.17702	4.917	0.018	0.18	10	0.018
12	0.3	8.33	0.025	0.273	7.583	0.023	0.245	6.816	0.02	0.216	12	0.018
15	0.3455	9.59	0.023	0.326	9.055	0.022	0.2966	8.24	0.02	0.27	15	0.018
20	0.4405	12.23	0.022	0.3853	10.703	0.019	0.3635	10.09	0.018	0.36	20	0.018
25	0.5235	14.54	0.021	0.4818	13.38	0.019	0.425	11.822	0.018	0.45	25	0.018
30	0.66157	18.37	0.022	0.59332	16.48	0.02	0.5514	15.31	0.018	0.54	30	0.018
40	0.803	22.30	0.02	0.722	20.05	0.018	0.652	18.11	0.018	0.72	40	0.018
50	1.06197	29.49	0.021	0.9371	26.03	0.019	0.8484	23.56	0.017	0.9	50	0.018
60	1.26391	35.10	0.021	1.1648	32.35	0.019	1.0463	29.064	0.017	1.098	60	0.018
80	1.63251	45.347	0.02	1.4113	39.20	0.018	1.3007	36.132	0.016	1.44	80	0.018
100	2.11346	58.70	0.021	1.8182	50.50	0.018	1.57334	43.703	0.016	1.8	100	0.018
120	2.5265	70.18	0.021	2.1736	60.37	0.018	1.8808	52.24	0.016	2.16	120	0.018
150	4.1323	114.78	0.027	3.6845	102.34	0.024	3.3049	91.803	0.022	2.7	150	0.018
200	5.0239	139.55	0.025	4.7104	130.84	0.024	4.20001	116.66	0.021	3.6	200	0.018
300	6.3474	176.31	0.021	5.7307	159.18	0.019	5.2885	146.90	0.018	5.4	300	0.018
500	8.2825	230.60	0.016	7.2692	201.92	0.015	6.5660	182.38	0.013	9	500	0.018

※ 배수: 각 호 면적이 독립된 1호크기의 몇 배인가를 의미함. 예를 들어, 100호 면적(2.113466)÷독립된 1호 크기 면적(0.036)=배수(58.707)가 된다.

※ 단위면적: 각 호 면적을 호수로 나눈 값. 예를 들어, 100호 면적(2.113466)÷호수(100호)=단위면적(0.02113466)이 된다.

5. 입체조각의 크기의 산출기초를 평면의 크기(m²)으로 규정한 이유

5.1.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전래되어 온 석조 입체물 크기 산출방법

5尺×3尺×7尺 크기의 돌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공면적과 가공비(임금)를 산출하는 경우,

■외(표)면 가공면적은 {(5尺+3尺+5尺+3尺)×7尺}+{(5尺+3尺)×2개소}=142尺이 된다.

■돌의 용적을 말할 때는 5尺×3尺×7尺=105尺로 계산하고, 원석 대금 및 운반비 등을 결정할 때나 중량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 돌 가공비(임금)은 142尺×5,000원(尺당 인건비)=710,000원(총 인건비)

5.2. 조각작품의 표면상태가 작품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조각예술의 90%는 대체로 표면처리의 상태에 따라서 작품의 질적 우열이 결정되므로 표면적
을 산출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다.

5.3. 5중 이하의 소형작품은 중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5중 이하의 소형작품은 산출기초와 상관없이 제작의 정밀성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중수에서
제외하고 중수법은 5중 이상의 조각작품에만 적용된다.

6. 중수법에 의한 조각작품 크기 계산방법

6.1. 조각작품의 자체공간과 여백의 문제

조각작품은 공간을 점유하는 상태에 따라서 작품의 우열을 논하게 되는 예술이다. 예를 들어,
100평 넓이의 정원에 설치할 작품의 제작을 위촉받은 경우 작가는 제작에 앞서 100평 공간
에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은 공간과 일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조각의 공간 점유 상태를 연
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품제작에 착수하게 된다.

100평의 공간에 세워지게 될 조각작품의 크기를 예술적 차원에서 본다면 100평 공간의 ‘조
각적 캔버스’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평면적인 회화와는 달리 조각작품은 그 자체로 무한의
공간성을 갖는다. 그러나 무한의 공간성을 갖는다고 하여 무작정 그 크기를 무한대로 부풀릴
수도 없는 것이며 100평의 공간 내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당한 크기를 지니는
입체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각작품의 크기는 그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공간
의 크기만을 그 작품의 실제크기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동양화·서양화·서예작품의 크기를 정할 때, 단 한번의 획을 그어 완성된 회화라도 안료가
묻은 면적만으로 작품의 크기를 정하지 않고 그것이 그려진 종이나 캔버스의 크기를 기준으
로 하여 작품의 실제 크기를 결정한다. 즉, 작품에는 작가에 의해서 그려지거나 다듬어지지
않는 “여백”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각작품에서도 여백공간을 인
정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조각작품의 자체공간이란 최대 부출 부위를 중심으로 공간에 수직
·수평으로 선을 그어서 그 선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6.2. 입체조각작품의 크기 산출 방법

최대 부출 부위에서 수직선·수평선(예의 점선)을 그어 직각육면체를 구하고 밑부분의 면적을
뺀 전면·후면·좌측면·우측면·상부 등 5면의 면적의 합을 중단위 0.018㎡로 나눈 값이
조각작품의 중수가 된다. (하나의 흉상작품의 예시: 5개의 면으로 각각 나누어 본 도면과 입
방체 상태의 예시)

예를 들어 높이 1.20m×넓이 0.80m×깊이 0.50m인 조각작품의 중수를 계산할 경우, 전면·후
면·좌측면·우측면·상부 등 5면의 면적의 합은 (1.2×0.8)×2면=1.92㎡, (1.2×0.5)×2면=1.2㎡,
(0.8×0.5)×1면=0.4㎡의 총 합계 즉, 1.92+1.2+0.4=3.52㎡가 된다. 그 다음 이 면적의 합을
중당 면적으로 나누면 중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3.52㎡÷0.018㎡=195.5중이 된다.

6.3. 부조(반입체)작품의 크기 산출방법

입체조각과 동일한 방법으로 5면을 구하고 중수를 산출한다. 즉, 부조가 차지하는 실제공간의 면적은 세로×가로로 산출되지만 부조 작품의 경우 흔히 평면 위로 가장 볼록하게 부출된 부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출 정도 (부조의 “깊이”)를 작품의 “높이”로 삼는다.

그러므로 부조작품의 중수는 (세로×가로)+{(세로+ 가로)×2×높이}÷0.018㎡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7. 중단위와 예술성의 대가

모든 조형예술작품은 정신성을 유형적 물질을 매개체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곧 “정신=작품”이라는 점에서 표현된 결과물의 예술적 우수성에 따라서 예술적 대가(代價)를 평가해야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상 조형예술작품의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서양화의 소묘·수채화·유화·프레스코, 동양화의 수묵화·채색화 등의 장르에 따라서 사용된 재료비와 노력과 제작기간 등의 차이가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동일인의 작품이라 해도 사용된 재료와 제작에 투입된 노력과 기간 등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진다.

7.1. 제작과정의 차이

회화: 선택된 재료에서 시작 완성을 볼 수 있는 1단계 제작과정을 거친다.

조각: 필수과정인 점토모형을 제작한 후에 석고상을 제작하고, 그런 뒤에 돌·청동·기타의 최종재료로써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3단계 제작과정을 거쳐야 한다.

7.2. 작품 취급상의 차이

회화: 물량면에서는 평면이므로 입체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다.

조각: 재료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물량면에서는 변동 없이 입체에 따른 입체공간의 차가 3배 이상이 되며, 중량적이어서 운반 및 설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과 기술이 요구된다.

7.3. 묘사 및 표현의 차이

회화: 묘사 및 표현대상을 보는 시점이 하나이므로 그 하나의 면에 기준하여 완성하면 된다.

조각: 3차원으로서 여러 각도의 시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7.4. 재료상의 차이

회화: 유화·수채화·묵화·세필화·목탄화 등

조각: 석고상·청동주물상·주철상·알루미늄주물상·석상(화강석·대리석)·목조상·???상·초자상·테라코타상·P.V.C.상 등

상기한 바와 같이 조각은 회화에 비하여 3배 이상의 재료·정신·노력 등을 소모해야만 하므로 동일한 사회적 대우 및 평가를 받는 작가의 경우라 해도 회화와 조각의 호당 단가의 등차는 회화의 3배 이상으로 설정해야만 한다.

[연구자 참고사항]

* 1970년 12월 29일자로 김영중이 「조각작품 산출단위 설정을 위한 조각분과위원회 소집의 견」을 미협 조각분과회원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이 자료는 그 이전에 작성된 초고일 것으로 추정된다.

* 초고의 “차례”의 첫머리에는 “산출기초 설정의 필요성”을, 그리고 맨 끝 부분에는 “기호 및 산기초 설정의 의의”를 언급할 것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본문의 내용 중에는 이 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누락 혹은 생략되어 있다.

* 조각작품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중’을 기준단위로 삼게 된 과정을 소상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 초고상태의 자료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 셈이며, 이 외에 1978년 2월 15일자 최노석의 글 「막 열린 중시대/크기 규정 생겨 조각계 새바람」(미술) 『경향신문』의 자료가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요약하여 담고 있다.

* 당시 조각가로서 김영중이 중수법을 창안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배경 및 취지, 연구과정 전모, 혹은 그 과정에서 그가 보다 더 중요시하였던 사항들을 간단하게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6년 7월 13일 김영중이 미협 이사장에게 보낸 건의서 글 「조각가의 행정적 대우에 관한 건의」(MS. 1976.0713)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중수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김영중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어서 그 내용을 기록해 두기로 했다. 그가 1998년 5월 5일 오래 전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들려주었던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여기에 첨부해 둔다.. (아래에 열거되는 중수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날 있었던 김영중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연구파일2Ax.03: 그림값·미술시장 관련” 및 “연구과 2Ca..01: 중수법”에 이미 수집·보존된 다른 관련자료들을 조사하여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재구성한 것이다.)

중수법의 창안배경과 취지

* 당시까지도 김영중의 스승 혹은 선배들은(윤효중, 김종영, 김경승 등) 동상 제작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 건축공사에 쓰이는 건설품셈표 혹은 일위대가표(一位代價表), 건설부 혹은 조달청에서 만든 물가시세표, 문화재관리국에서 만든 문화재보수규정 등에 의한 견적요령에 따라서 반드시 소요재료의 물량, 재질, 인건비 등을 상세하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며, 작가의 예술성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여 작가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출된 견적서를 근거로 하여 재료비, 인건비, 잡비, 그리고 약간의 예술비(?술가) 등을 보태어 조정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식의 관례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한 관례로 인한 부작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작가들의 창작여건을 불리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 첫째, 예술품의 가격이 아니라 공사(건설 요율표에 의한 조각공사)견적 가격에 의하여 계약하게 됨으로써 작가들간에도 제작, 설치될 작품을 예술작품의 예술성의 우열보다는 공사총액으로 경합을 벌이는 꼴이 되어버렸다. 조각가는 예술가가 아닌, ‘건설업자’와 같은 처지에서 일하게 되므로 서류에서부터 예술가의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둘째, 물량대비 “공사견적서”에 의한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인지라 그러한 처지에서는 작가로서는 “예술비(재료가)”는 눈치보느라고 높게 적지도 못하니 대신 재료나 인건비 등의 수량을 실제보다 늘려서 견적서를 써내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 결과적으로는 작가의 양심조차 불

신 당하는 꼴이 여기 저기서 목격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구매자(발주자)는 제작도중에도 재료비와 실제 사용된 재료의 수량을 따지거나 완성직후에는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량을 낱낱이 헤아려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동상의 경우 일일이 실제중량을 달아서 계측한 결과를 견적서와 대비,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등 작가와 구매자(발주자)간에 마찰이 심하게 발생되곤 하였다.

* 셋째, 기존의 견적방식으로는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작가의 거듭된 실험과 연구에 따른 물량소모는 물론 작가의 재량에 의한 작업의 외적 상태나 여건에 변화를 가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 설사 물량 소모를 인정한다해도 건설법에 명시된 대로 '손실 및 잡비로 인정되는 20% 범위내의 재량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 계약당시보다 더 좋은 상태의 작품 제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막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중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예술가의 작품창작과 관련한 재량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 넷째, 당시로서는 특히 동상제작 붐을 타고 관청에서 발주하는 동상작품의 제작기회가 조각가들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큰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러한 기회가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덜미를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좌천 혹은 파면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들이 그러한 업무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조각작품 제작의뢰가 아예 취소되는 결과가 속출하였다.

* 다섯째, 예술적 가치를 더 우선하여 평가되어야 할 예술품을 그것의 제작에 소모된 재료의 물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작품의 가격결정에서까지 절대적인 잣대로 적용되는 모순과 부당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할 터인데, 그러한 시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수법의 창안과정과 재발견된 사실들

* 김영중이 조각작품의 단위를 정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4년경부터였다고 한다.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오던 김영중은 정확한 수학적 계산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리학 박사 이병혁씨(전 연세대 교수)를 찾아가서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 별다른 대안을 발견해내지 못하자 이 박사가 먼저 중도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다. 때문에 4년째 되던 해(1967년경)부터는 김영중 혼자서 이 문제에 매달려서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1969년경에 이르러서야 적절한 계산법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고 한다. 드디어 1970년 김영중은 중수법의 창안작업을 마무리 짓고 미협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 결국 중수법의 창안에 이르기까지에는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 김영중의 중수법의 창안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조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필연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몇 가지 연관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① 면적·부피·무게 중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조각의 크기를 정할 것인가?

일찍이 서양에서는 평면예술인 회화의 크기를 면적의 기준으로 삼고 그 면적의 산출기준으로써 '호'(號)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조각의 경우는 외국에도 통용되는 마땅한 기준이 없던 차인지라 조각에서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크기를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었다.

김영중이 조각크기 산출을 위한 계산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심했던 문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였다.

조각작품은 대체로 무거운 것이므로 그 무게를 기준으로 하여 크기를 정할 것인가?

대답은 'NO'였다. 조각작품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그 무게는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으므로 그것은 김영중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었다.

입체예술이므로 '부피'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서양에서는 흔히 입체의 크기를 '부피'를 기준으로 하여 '루배'(m³)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각** 역시 입체예술작품이므로 그리하여야 할 것인가? 그런데 조각작품이 입체적인 예술이긴 하지만 입체물의 예술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덩어리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덩어리의 표면에 표현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부피'가 아니라 '표면'이 **미술(comment by 이태원)**인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김영중이 입체예술인 조각작품의 크기를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게 된 이유였다.

② 그 단위의 '명칭'을 무엇이라 할 것인가?

서양화의 경우 '호'(號)를 단위의 명칭으로 삼고 있는데, 조각의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무엇이라 할 것인가? 과학적 발견 혹은 발명의 경우에는 흔히 그것을 발명하거나 발견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 거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는 점에 김영중은 주목하여 **일단은 그것을 고안하는 사람 즉, 김영중 자신의 이름을 따서 '중'(仲)이라 해두자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단위의 명칭은 **중(仲)에서 중(重)으로 변경되었다.** (이 변천과정은 아래 설명 참조)

③ 조각작품의 실제크기는 어디까지를 인정해야만 하는가?

조각은 공간을 점유하는 예술이다. 조각작품의 점유공간이란 실상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어서 그것을 곧 조각작품의 실제크기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제작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조각의 크기를 관례대로 그 작품의 제작에 소모된 재료 혹은 물량의 대소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 될 일이었다. 따라서 조각작품의 실제크기는 그 작품이 점유하는 공간의 크기를 기준 하여 정하되, 그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자체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조각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자체공간이란 실상 작품의 "여백공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각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여백공간'의 가치(필연성과 중요성)가 수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회화에서는 - 캔버스에 그려진 서양화든 종이에 그려진 동양화나 수채화든지 간에 실제로 작품의 크기는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여백의 공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여져 온 터이므로 조각작품의 경우에서도 '여백'이 조각작품의 자체공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도, 무리한 생각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회화에서 그려지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각에서도 작품의 "자체공간"은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여백" 즉, 물질로 채워져 있지 않은 구멍이나 오목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어떻게 입체의 체적을 평면의 면적으로 전환시켜 산출할 수 있는가?

일단 조각작품에서 '여백'을 인전하는 근거(타당성)를 찾게 된 후에는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입체의 체적을 평면의 면적계산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평면예술인 회화작품이 하나의 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조각작품은 대체로 전·후·좌·우·상·하의 6개의 면을 갖는다. 즉, 하나의 조각작품은 "육면체 입방형"으로

서 6개의 평면의 결합형태로 인식을 전환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대체로 조각 작품이 놓여지거나 세워지게 될 때 작품의 바닥면(아랫면)은 외부로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면이 아니며, 조각작품의 예술적 판단은 대체로 바닥면을 제외한 5개 면의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조각작품이 지니고 있는 실질적인 자체공간의 크기는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면의 합으로 보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⑤ 서양화의 ‘호’ 보다는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산법이라야 한다

서양화의 ‘호’수는 10진법에 의한 계산법이 아니므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서양화의 호수란 실지로는 한국의 행정적 통념으로는 납득되기 어려운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묵인되고 있을 뿐이다. 김영중은 그러한 비논리적인 불합리성을 지닌 서양화의 ‘호’ 개념보다 더 합리적인 계산법은 반드시 “십진법”을 근간으로 한 계산법이라야 할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다.

⑥ ‘0.018m’ 라는 공통인자의 발견

그런데 이쯤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서양식의 면적 계산법과 한국식의 면적 계산법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0.018m’ 라는 공통인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 서양화의 ‘호’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표2, 표3 참조)

서양화에는 같은 ‘호’라 하더라도 그 실제 크기가 서로 다른 3종이 통용되고 있다.

서양화 5호 크기의 회화 3종(F, P, M형)의 면적의 총합계를 호수의 총합계로 나눈 값은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0.0170752로서 이를 반올림하면 0.018이 된다.. (5호 크기 회화 3종의 면적 총합계는 $0.095004\text{m}^2 + 0.084216\text{m}^2 + 0.076908\text{m}^2 = 0.256128\text{m}^2$ 인데 이를 호수의 총합으로 나눈 값은 $0.256128\text{m}^2 \div 15 = 0.0170752\text{m}^2$)

그리고 서양화의 1호부터 500호까지의 총 면적의 합을 호수의 총합계로 나누어보니 그 값은 역시 0.0187145m²(약 0.018m²)이라는 수치로 나타났다..

■ 한국의 전통적인 길이와 면적단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 ‘자’ : 1자=30cm=0.3m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 ‘평’ (尺): “1평 = 1자×1자 = 30cm×30cm = 0.3m×0.3m = 0.090m²”
 국내에서 돌의 크기를 잴 때 통용되는 단위 - 면새(面才): “1새 = 1자×1자 = 30cm×30cm = 0.3m×0.3m = 0.090m²”

그런데 서양화 호수별 면적과 한국전래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를 비교를 통하여 크기가 1면새의 육면체 입방형의 조각작품의 크기는 회화의 5호 크기정도의 면적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즉, 1면새 크기의 입체의 크기는 $(0.3\text{m} \times 0.3\text{m}) = 0.090\text{m}^2$ 이다. 그래서 이 1면새의 크기값을 ‘5’으로 나누면 $(0.3\text{m} \times 0.3\text{m}) \div 5 = 0.018\text{m}^2$ 가 되었던 것.

■ ‘0.018m’ 라는 공통인자와 중(仲) 개념 탄생

이로써 드디어 김영중은 서양식의 호수 개념에서나 한국식 면적이거나 크기 계산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0.018m’ 라는 공통인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김영중은 드디어 조각작품의 크기를 정하는 단위의 기준을 “1중(仲) = 0.018 = (0.3m×0.3m)÷5”라는 계산법에 의하여 고안하게 되었다.

즉, ‘중’(仲)이란 서양화의 호(號)수와 대비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한국 전래의 면적/크기 계산법인 ‘평’이나 ‘면새’(사이) 개념을 아우르는 것이 되었다.

⑦ 부조(浮彫)의 크기를 정하는 문제

조각작품에는 입방체로 인식할 수 있는 환조이외에 “부조”(浮彫)라는 영역도 있다. 환조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부조의 크기를 정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했다. 부조작품은 평면에 가까운 것으로서 환조와는 또 다른 별도의 계산법을 적용하여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중수법을 적용시켜서 계산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했다.

■ 중수법의 발명자는 맨 처음에는 환조와 마찬가지로 부조작품의 경우에도 중수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부조의 최대 두께(혹은 파여진) 부위를 기준으로 요철(凹凸)의 정도 즉, “부조의 깊이”를 조각작품의 “높이”로 인식하여 적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그런데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부조의 크기를 산출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첫째, 요철의 정도가 4cm 미만인 경우에는 평면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여기게 되어 중수법에 의한 크기 산출에서는 제외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요철의 정도가 4cm가 넘을 경우에는 “세로×가로”의 값을 그 작품의 중수로 정하고 거기에 요철 정도가 매3cm 추가될 때마다 총 중수의 2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중수법의 공식제안에서 확정 및 시행에 이르기까지

* 중수법 창안 마무리를 끝낸 김영중은 미협을 통하여 공인을 받아냄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제도로서 정착시키고 널리 보급하여 활용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 12월 29일: 김영중, 「조각작품산출단위 설정을 위한 미협 조각분과위원회 **소집의뢰서**」 작성, 제출하였다.

(정확한 날짜불명): 미협, 조각분과위원회의 개최(?). 이 회의에서 김영중은 중수법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수법의 명칭이며 그 적용방식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김영중은 회고하였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러하듯이, 김영중은 자신이 발명한 조각단위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중”(仲)으로 명명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일부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들이 사용토록 하자면서 그 이름부터 지나치게 ‘김영중’이 강조되면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김영중은 발명자(자신의)의 이름에서 따온 중(仲)보다는 조각작품의 무거운 중량감을 느끼게 하는 “중”(重)자를 쓰면 어떨지 새로운 제안을 내었고, 이에 회원들의 찬성을 얻어서 조각 크기 산출 계산법의 단위는 중(重)으로 결정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중수법은 김영중이 창안, 미협에 제안하여 미협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중(重)이라는 조각작품의 크기산출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 ‘重’이라는 한자는 ‘무거운 중’이면서 ‘겹칠 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자) 사용이 더 일반화되어 있던 당시로서는 그 한자어의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었을 것이나 요즘처럼 한글 우선 사용원칙이 일반화되고 보니 그 한자어의 뜻은 어찌되었건 간에 그냥 똑같이 ‘중’이라고만 불리게 되니 이는 결국 발명가의 원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게 된 것은 아닌 결과가 된 셈이다.)

* 1972년 12월 19일: 김영중은 「한국조각문화연구회 이사회 안건」을 작성하였는데, 제9번 안건으로 “중당 기준 책정(조각단위 산출 기초) 문공부 장관 및 건설부 장관 인정(정부산출기초

책자에 게재)”라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조각가들의 공동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하여 ‘중수법’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 위와 같은 논란까지 벌어가며 미협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던 중수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6년의 서울시와 조각가 김영중 간에 체결된 「비천상부조제작계약서」(LD1.1976.0228)라는 공식 문건을 통해서야 확인되고 있다. (사실 이 계약서 이전에는 중수법이 적용된 사례에 관한 여하한의 기록도 전혀 수집·보존되어 있지 않다.)

* 게다가 김영중이 1976년 7월 13일 미협에 보낸 문서 「조각가의 예술인으로서의 행정적 대우를 위한 건의서」(MS.1976.0713)에서는 조각의 크기산출기준의 단위를 서양화의 호와 마찬가지로 ‘호;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사용의 일관성 결여는 특히 이 무렵에 제작(했던) 김영중 자신의 ‘부조’ 작품들의 계약 시에도 나타나는데, 당시에 이미 일반인들에게 널리 친숙해진 회화의 ‘호’ 단위만큼 ‘중’이라는 단위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되며, 환조와는 다른 부조 작품은 회화와 유사한 방법으로 ‘호’수 개념을 도입하여 계약시 적용해도 크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은 동시에 당시까지도 ‘중’이라는 단위의 명칭이나 규정자체가 널리 인식되었거나 적극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따라서 지금처럼 중수법이 일반화되기까지는 회화의 호수와는 차별적인 ‘중’수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한 별도의 각별한 노력이 김영중 자신은 물론 미협이나 조각가들에 의해서 기울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수법의 명칭의 공식결정과정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수집되어 있지 않아 당시 미협 혹은 조각가들의 반응이나 공식적인 내용 및 결과는 확인할 수가 없다.)

* 그리고 (우연의 일치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수법의 활용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1976년부터는 동양화부문에서도 서양화의 호수개념을 그대로 도입,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화선지의 크기가 들쭉날쭉한 데서 오는 불편함과 호수를 매겨서 제작·사용되는 일본 화선지의 영향과 호수 개념이 지닌 편리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 등에서 찾아지고 있다. (최노석 「동양화 호수에 문제 있다」 『경향신문』 1978. 2. 23 참조.)

1976년 7월 8일: 서울시400-609호 질의서 (서울시장이 미협 이사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장에게)

1976년 7월 13일: 김영중, 미협 이사장에게 「조각가의 행정적 대우에 관한 건의서」 제출

1976년 7월 26일: 미협 서세옥 이사장, 서울특별시장께 미술품단가 협의 회신

1976년 7월 28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장 정영령, 서울특별시장께 「미술품단가협의회신」(서울시400-609호 질의서에 대한 회신)

1976년 8월 17일: 미협, 중당가 제정 (확정 발표, 사용권장)

1976년 8월 30일: 미협, 전 회원에게 조각단위 제정통보

1976년 12월 28일: 김영중, 서울시와 중수법에 의한 <비천상> 제작용역계약 체결

(이로써 중수법에 의한 조각작품 제작 및 설치 용역계약의 최초의 적용사례가 탄생되었음. 세종문화회관 외벽 부조 <비천상>의 작가선정 및 용역계약, 제작과정 등을 살펴보면, 1976년 5월경 작가위촉 → 에스키스 제작 → 9월 심의위원회 통과 → 건축/건설건적요령에 의한 방식이나/중수법에 의한 중당가 적용에 의한 방식이나의 계약방법을 가지고 김영중과 서울시 사이의 3개월간 논란 → 그 과정에서 서울시-미협 간, 서울시-중앙대 예술대 회화과 간의 서면질의와 협조가 이뤄지게 되었음. → 1976년 12월 28일 정식 계

약 체결/중수법 최초 적용사례 → 1976년 12월 31일 원형(모형)완성 → 1978년 4월 세
중문화회관 중공과 동시에 작품 제작 및 설치 완료를 보게 되었다.

(실제로 작품의 원형(모형)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음에도 공식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서
면상으로는 <비천상> 1쌍의 원형(모형)이 3일 동안에 제작한 결과가 되었음. 이를 계기
로 세종문화회관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일부는 중수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1985년 3월 8일: 미협, 조각가들에게 「조각단위 사용 의뢰」 재차 통지

(이미 1976년에 확정 발표되고 사용을 권장한 바 있던 중수법에 대하여 이 때에 다시
소개되고 권장되고 있는 것.)

1985년 3월 22일 이전: 한국조각가협회, 「조각단위(중) 사용 및 산출방법」 통지
(미협과 한국조각가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중수법 사용에 관하여 재차 통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서 이 때까지도 중수법의 활용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크지 못하였던 것 같고,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수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선에서는 여전히 여
러 가지 혼선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다.)

중수법의 장점(기여도)

* 중수법은 그 편리함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특히 서양화의 호수법과 조각
의 중수법을 비교해보면 중수법의 편리함이나 합리성은 금방 입증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계산법은 비록 우리 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계산법이라 하나 전 세계 미술사를 통하여
매우 독특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과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 중수법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조각작품의 크기에 대한 이해(인식)가 쉽고 편리하다는 점
이다. 입체인 조각작품의 크기를 “높이×넓이×폭”으로 수치를 나열하는 방법만으로는 그 대
소(大小)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십진법을 근간으로 마련된 중수를 기준으로 이해하
면 작품의 대소(大小)를 가늠하기가 빠르고 도 쉽게 이해되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 게다가 중수법은 제작비 산출이나 작품의 가격 산출 시에도 판단을 위한 또 하나의 기준으
로써 매우 간단하고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중수법이 활용되면서 청
동주물공장이나 돌 공장의 업주들에게 이 규정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각작품의 유통과정에서 작가나 화상(중개자)뿐만 아니라 발주자(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작가
간의 혹은 작품간의 상호 비교나 선택에 매우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다.

* 특히 관공서/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과거 물량적 방식의 감사에서 벗어나 동원되는 물량,
기술자 및 인부의 수량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도 중수에 의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견적만
제출해도 됨으로써 “견적서” 내용이 간단하고 “감사”받을 때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발생되
지 않게 되었다. 다만 해당 작가의 중당 단가가 서로 상이한 경우, 그러한 중당가를 적용하게
된 근거를 공신력 있는 기관(미협)에 의뢰하고 그 기관의 회신을 받아서 처리함으로써 더 이
상 과거처럼 담당 공무원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어 업무상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
나게 되었다.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된 후로는 조각작품 계약을 놓고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
이익을 받을 일이 없어지니 조각작품 의뢰나 구입 등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는데도 기여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크기 산출을 위한 중수법이 가격산출기준으로 적용되어 발생하는 폐단

* 이미 “호당 단가”가 미술품의 거래 관행 속에서 뿌리깊게 자리하게 됨에 따라서 미술계의 고질적인 폐단을 가져 온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작품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만들어진 “중수법”은 이후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조각작품의 가격산출기준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게 됨으로써 반갑지 않은 역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즉, 원래 크기를 위한 단위였던 ‘중’수 개념이 중수법 제정의 원 취지와는 달리 ‘중당가’ 혹은 ‘중단가’ 등으로 불리며 그것이 마치도 조각작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유일무이의 절대적 기준이자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치(최우선적인 가격산출기준치)인 것처럼 일률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오히려 그 폐지론이 제기될 지경에 이르렀다.

당초에는 중수법이 없어서 감수해야만 했던 작가로서의 불이익이나 부당함을 극복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예술가로서의 권한이나 자존심을 회복시켜보고자 했던 것이 작품의 시장거래 혹은 유통질서과정에서 이뤄지는 무리한 중당 단가 적용과 그로 인한 부조리로 인하여 폐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폐지되어야 할 것은 중당 단가 적용의 부도덕성과 부조리 측면이지 작품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중수법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 김영중이 최초로 중수법을 창안할 때는 그것을 곧바로 가격산출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써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자료를 포함하여 미협과 한국조각가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발송한 중수법의 사용을 권장하는 몇몇 자료(LD2.1976.08.30: 미협, 「단위 제정 통보」, LD2.1985.0308: 미협, 「조각단위 사용 의뢰 및 산출방법통지」, 그리고 LD2.1985.0322이전: 한국조각가협회, 「조각단위(중) 사용의뢰 및 산출방법」 등 참조)에서는 이 ‘중’수가 작품의 가격산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 우리 나라에 서양화의 호수개념이 도입된 것은 일본을 통해서 일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적으로 종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절’의 개념으로 통용되어 오던 동양화 크기를 서양화의 호수 개념으로 바뀌어 국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경부터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노석 기자, 「동양화 호수(號數)에 문제 있다」 『경향신문』1978년 2월 23일, 참조) 그런데 원래 작품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단위였던 ‘호’의 개념이 국내 미술계에 들어와서는 언제부터인가 작품의 ‘가격’을 매기는 거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 그러나 대체로 중간 크기 이하의 작품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호당 단가는 작품의 크기가 커질수록 단가를 낮추어서 적용하기도 하며, 작가의 생존시에는 호당 단가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작가의 사후에는 호당 단가란 하나의 참고에 불과하고 결국은 “작품의 질” 즉, 미술사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가격산출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 흔히 작품의 가격산출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작품값을 산출하는 첫 단계는 걸작과 타작을 구분하여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데 최우선적인 판단 근거(예술적 평가기준)가 되는 것은 “작품의 예술적 성취도”, “예술사적 가치”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곧바로 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작품의 우열을 가린 다음에는 가격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기준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즉, 작품의 대소크기, 작품에 투여된 “재·인력·시간의 수량”과 “제작의 난이도와 기술” 등을 고려한 “제작상의 특징”, 그리고 “작가 경력”도 매우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 중수법을 최초로 주창하는 이 글에서 김영중은 이미 예술작품의 우수성에 따라서 예술적 대가(代價)가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하고 있으며, 제작상의 차이, 작품의 취급상의 차이, 묘사 및 표현의 차이, 재료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중당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당 단가의 일률적인 적용이란 아예 불가함을 이미 지적해둔 것이다.) 수법에 의한

중당 단가라는 개념은 조각작품의 가격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의 기준을 될 수가 있으나 그것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는 없이는 우리가 서양화의 호(號)수를 회화작품의 단가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 그런데 이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중수법과 관련된 몇 종의 문서들에서 중단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각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중당 단가를 정한다”는 내용이 항상 언급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작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중당 단가를 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내포하는 주관적인 한계로 인하여 수용자와의 갈등이나 마찰을 예견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영방은 이를 두고 ‘옛장수’와 다름없는 행동이라 비판하고 있으며, 그렇게 매겨진 (값을) ‘옛가락 값’이라 하고 있다. 임영방. 「그림값이 너무 비싸다」 『동아일보』 1977. 11. 2. 참조

* 미협외 문서(미협제176호, LD.1976.0726),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의 문서(LD3.1976.0728)는 국내 작가별 호당 단가를 “작가의 경력을 중심으로” 대가(5-10만원), 중견(2-5만원), 신인(?-1만원)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979년경에는 대가(10-15만원), 중견(5-10만원), 신인(?원) (LD1.1980.0621 미협제131호 문서 참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작가별 호당/(중당)단가는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위의 모든 자료에서 중당 단가는 회화의 호당 단가보다는 2-3배정도 더 높게 책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우리 미술계에서 왈가왈부 되는 호당/중당 가격시비의 핵심적인 요건은 대체로 다음 3가지 사실과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가격산출에 최우선적 근거가 되어야 할 작품의 질적 우열이나 그 기준이 될 만한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무조건 “아무개의 것은 호당 얼마”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다는 점, 작품의 우열이 “작가의 경력을 위주로 대가·중견·신진 등으로 대별하여 비교·구분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서 “누가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 하는 식으로 “작가 스스로에 의해 정해진 값”이라는 점에서 작가들의 예술가로서의 양식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일률적으로 정해진 호당가/중당가라는 것이 작가의 경력을 중시한다고 해서 일정 기간동안에 해당 작가의 예술적 성장이나 작품의 예술성의 중대가 인지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거나 답보상태이거나 혹은 되레 퇴보하였다고 여겨질 수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호당 가격만큼은 매년 엄청난 비율로 상승하여 결국 “작품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졌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다.

* 중수법이 중단가 혹은 중당가로 적용되는 경우에 주로 지적되어왔던 폐단이나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다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 ① 특정 작가의 모든 작품이 동일한 작가의 것이라 해서 그 크기만을 기준 하여 중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즉, 동일 작가의 작품이라 해도 작품의 값은 작품의 우열과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한다. 가령 피카소의 작품이라도 걸작과 타작의 구분이 있으며, 가격 역시 천차만별인 것이다. 또한 니 차등이 필요하다. 동일작가의 것이라 해도 대개 작품이 클수록 호당/중당 단가는 낮추어 적용되기도 한다.
- ② “작가의 경력”을 따져서 대가, 중견, 신인의 구별은 가능하다고 해도 나이나 활동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아무개의 작품이 호당/중당 얼마니까 내 것도 얼마”하는 식의 상대적 비교적용은 곤란하다. 이러한 비교와 경쟁이 결국 터무니없는 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동시대 작가라 해도, 그리고 비슷한 경력을 소유했다고 해도 작품의 가격은 일률적으로 대비되어 정해질 수 없다. 즉, 피카소와 브라크가 동시대 작가라 해도 결국 두 사람의 작품에 매겨지는 값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
- ③ 작품의 “여백처리”와 관련된 악용사례는 ‘옛가락 식 가격’이라는 비난의 주된 원인이 된다. 단순히 작품의 중수를 늘리기 위하여 무턱대고 여백을 넓히는 사례는 작가와 발주자간의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작품에 있어서 여백처리는 그 작품이 지니는 내적 필연성에 의해서 그 처리정도의 타당성이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백의 처리정도

혹은 타당성에 따른 중당가의 차등이 필요하다. 즉, 역백사용의 정도에 따라서 호당/중당 단가의 적용에도 역시 차등을 두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 ④ 중당 단가는 조각적 노력의 정도나 제작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조각작품이 매우 넓고 키가 높은 좌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좌대 역시 작품의 조형적 효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이므로 작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런데 표면이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마감처리된 화장석 판석을 여러 조각 연결하여 붙이는 방식으로 완성된 이 좌대가 여러 명의 군상이 결집되어 있는 작품의 주요부분의 세밀하고 복잡한 처리방식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좌대 부분에 적용되는 중당가와 좌대 위에 조각된 작품의 주요부분 적용되는 중단가는 차이를 두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 ⑤ 호당/중당 단가를 놓고 **빛**어지는 모든 논란의 결론은 작품의 크기산출 기준이 작품의 질적 평가의 기준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작가나 화랑(중개자)의 일방적 호당/중당 단가 결정과 수용요구는 객관적 근거제시와 그 근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용되어야만 유통질서가 바로잡히게 된다. 작품의 가격은 위에서 언급한 판단을 위한 모든 기준들(판단 및 평가를 위한 제반 요소/근거들)을 기준으로 작가·중개인(화상)·구매자(발주자) 3자간의 적절한 선에서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중당 단가를 일률적으로 혹은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작가들간의 무리한 가격경쟁을 조장하여 무조건 구매자(발주자)의 가격인하 요구만을 고집하는 것도 마땅히 시정되어야만 한다.